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2024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 송언석·강대식·김종양

구자근 • 최은석 • 정희용

신성범 · 강선영 · 권성동

백종헌 · 서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.

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%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,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.

특히, OECD 41개국 중 미국, 일본, 독일, 호주,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·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.

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·규모별·지역별·연령별로 구분하 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 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(안 제4조). 법률 제 호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중 "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"를 "종류별·규모별·지역별·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 2항 중 "종류별"을 "종류별·규모별·지역별·연령별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·규모별·지역별·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분) ① -----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 ----종류별·규모별·지역별· 할 수 있다.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 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(2) ---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 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---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 <후단 ----.. <u>이 경우</u> 사업 신설> 의 종류별 • 규모별 • 지역별 • 연 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